

## 국립생태원 공고 제2025 - 180호

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
수정 · 보완된 생태 · 자연도 일부도면(안)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 
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9일

국립생태원장

### 생태 · 자연도(生態 · 自然圖) 수시고시(안) 국민열람 공고

- 대상지역 :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산107-4 일대
-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- 생태·자연도 수정 · 보완 내용 (도면은 붙임 참조)

대상지역	도엽	생태·자연도 등급		비 고
		당 초	수정·보완(안)	
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산107-4 일대	장성 356123	1 등급	2, 3 등급	식생

### 4. 국민열람 실시

생태·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(1:25,000)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  
생태원 홈페이지(<http://www.nie.re.kr>)에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(토요일 포함)  
공개합니다.

## 5. 의견제출

이 생태·자연도 수시고시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내(토요일 포함)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생태원장(참조 : 생태조사연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생태·자연도 수시고시(안)에 대한 의견서

※ 생태·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의견 제출 방법

- 공문(전자문서) : 생태·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장  
(참조 : 생태조사연구실장)에게 의견 제출

※ 문의 :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(041-950-5672, 5680, 5682)